

장기중앙교회 정관

(2021. 00. 00. 제정)

전 문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확고히 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정관을 제정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기중앙교회」(이하'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속과 헌법)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합동'생략)에 소속한다.

②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장로회헌법'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교회 설립 및 본 정관의 목적) ①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장기동 142번지)에 둔다.

제5조(조직)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회 및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제직회를 두고, 그 외 실행에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교인의 구분과 범위) ①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그 이름을 등록한 후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②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당회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 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③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교인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여 당회에서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④ 유아세례·어린이세례 교인 : 유아세례 교인은 입교인(세례교인)의 자녀 중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하며, 어린이세례 교인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⑤ 입교인 : 유아세례·어린이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당회의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하여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

⑥ 이명 또는 전입교인 :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세례교인이라 할 지라도 소정의 절차를 통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본 교회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이하 이명교인이라 칭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흠 입교인과 무흠 세례교인(이하 '입교인'이라 함은 입교인과 세례교인, 이명교인을 포

함함)을 의미한다.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의 회원이 된다.

⑧ 입교인이 6개월 이상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 당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로 회복될 수 있다.

제7조(교인의 권리, 의무의 취득과 상실) ①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하게 된다.

②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별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인의 사용·수익권) ①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② 당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교인의 권리) 입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입교인은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무흠 입교인은 교회의 성찬식 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교인의 의무) 입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인은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공동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3.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 의무가 있다.
4.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교인의 권리 제한) 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교인은 성경과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정관에 따라 교회 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교회 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 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 장 직 원

제12조(직원의 구분) ①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위임목사), 장로(시무장로), 집사(시무집사)를 둔다.

②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를 둘 수 있으며, 당회가 임명한 협동장로, 명예권사,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③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교육전도사 포함)를 둘 수 있다.

④ 행정 및 관리직원 : 유급으로 행정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기) ①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②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남녀 서리집사는 1년으로 한다.

③ 시무장로와 시무집사는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④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행정 및 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직원의 직무) ① 항존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집사 :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재정을 수납 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③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일 경우 헌법에 따라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행정 및 관리직원 : 담임목사의 감독하에 교회행정업무 처리와 교회 재산(시설, 물품 등)을 관리·운용한다.

제15조(직원의 은퇴) ① 항존직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후 은퇴한 목사로서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3. 은퇴직원(장로, 집사) : 장로, 집사가 정년이 지나면 은퇴장로, 은퇴집사가 된다.

② 임시직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1.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2.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은퇴서리집사가 된다.

제16조(시행세칙 제정) ①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세부 인사규정(청빙, 선거, 위임, 임직,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선교사 파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7조(조직) ①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 ②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흙(권징치리)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한다.
- ③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2월 첫째주에 개최하고 임시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② 공동의회의 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후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홈페이지 등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배 직후에 개최한다. 단, 정관의 변경과 담임목사 청빙, 임직자 선거, 소속교단 및 소속노회 탈퇴·변경, 당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은 주일예배 직후에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관변경, 교회 본당과 그 대지의 처리와 매매·취득,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아래의 항목 외에는 투표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회 본당과 그 대지의 처리와 매매·취득은 본 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본 정관 제정과 개정은 본 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변경은 본 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⑦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 및 개정, 교회의 본당과 그 대지의 취득과 처분,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변경 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의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0조(결의 사항) ①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②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직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집사·권사 선거

④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⑤ 중요 재산의 취득·증여·매매·교환·변경·처분, 및 담보 제공.

단, 위의 사항을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공동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분립

⑦ 기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정된 안건

제21조(특별제한) ①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②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2조(서류 열람) ① 교회의 재정장부, 회의록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 교인은 자신의 헌금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교회에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제23조(특별규정) ①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에 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 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 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24조(당사자 제척)

① 의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다른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청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

다.

② 각 직원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도 당사자 제척 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①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②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③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 5 장 당 회

제26조(당회의 구성)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단, 원로목사, 원로장로, 협동장로를 언권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당회서기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당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1조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당회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 한다.

제27조(소집) ① 정기당회는 매월 회집하고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당회는 1주일 전에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4.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본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당회의 결의는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당사자 제척) ①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 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당 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②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0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①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담임목사의 청빙 심의 및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과 취임을 주관한다.
5.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결정한다.
6. 장로회헌법(권징조례),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재판 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9.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 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조)을 처리한다
10.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1. 부교역자의 임면(任免)과 선교사 임용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12.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등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한다.
13.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위원회) 및 기관 등 인사를 결의한다.
14. 교회운영지침을 수립(당회장)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다.
15.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16. 지도기관 및 위원회, 주일학교, 찬양대, 남.녀 전도회, 각 기관, 교구.구역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결의하거나 감독한다.

17.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②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2.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 제공을 결의한다.
4.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단 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해산을 결정한다.
5. 상기 3호, 4호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의결로 선 결정 시행 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단, 교회의 본당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동의회(정기 및 임시)소집을 결의한다.
7. 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 규정, 규약, 기준, 지침 등을 제정·폐기한다.
8.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9. 각종 명부와 교회직인을 관리 보관한다.
10.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을 심의한다.

③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2.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
3.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4. 본 교회와 산하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 감사(정기, 수시)를 실시한다.
5. 당회는 자문역,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운영위원회) 본 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사법처리(권징재판)는 예외로 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원 총수의 과반을 넘지 않으며 운영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당회장, 또는 운영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시급한 경우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인 당회장과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처리한 안건을 회의록으로 정리 보관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함으로 확정한다.

제32조(지도기관) ① 본 교회는 당회 직속의 지도기관으로 기획, 홍보,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인재양성, 장학, 봉사, 재정, 행정, 법무, 재산 관리 등의 사무를 지도할 국(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의 설치는 당회 결의로 한다.

② 각 국의 장(長)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도기관은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위해 위원회 사역을 지도하며 위원회와 서로 협력한다.

④ 지도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 연도 결산안과 차기 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두며, 당회 결의로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당회원, 안수집사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활동기간 :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9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활동한다.
3. 교회운영 기본지침 통보 : 당회장은 차기 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교회운영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당회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
4. 예산안 제출 :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
5. 결산보고서 제출 :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 연도의 교회 총수입 지출을 망라한 결산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6. 예결산안 의결 : 당회에 제출된 차기 연도 예산안과 당해 연도 결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차기 연도 12월 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7. 의결정족수 :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예결산위원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34조(당회의 권징재판) ① 당회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징재판을 행한다.
② 권징재판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35조(명부록)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관리 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교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급 년 월 일 기입)
 7.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교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어린이 세례 명부(유아세례·어린이 세례 년 월 일 기입)
-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한다.

9. 교회 역사
10. 교회 재정 장부
11. 기타 중요 문서

②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교회역사 기록을 위해 명부록에 포함시켜 보존한다.

제36조(회의록) ①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37조(시행세칙) ① 부서, 구역,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등의 세부 조직과 운영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38조(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업무의 집행과 주요 안건의 심의를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제39조(조직) ① 본 교회 제직회는 당회원, 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협동직분자 및 명예직분자,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②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검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회계는 재정부 회계가 겸임한다.
③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직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를 두며 세부 부서 조직은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40조(소집) ① 정기 제직회는 년 2회 이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 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할 때
 2.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상회(노회, 총회)의 명령이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 ③ 제직회는 1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1주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직회의 결산승인은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직무)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2.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42조(정족수 및 심의사항) ①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직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보고한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공동의회 상정 결의
2. 공동의회에서 위임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3. 당회에서 결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 심의 및 공동의회 상정 결의
4.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제43조(회의록) ① 제직회 서기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실에 보관한다.

②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 7 장 선거 및 임직

제44조(선거원칙) ① 본 교회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에게 주어진다.

②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의장(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46조(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최소 1주 전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47조(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선거공보)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9조(선거 및 임직) ① 본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단, 담임목사의 청빙은 위임을 전제로 할 수 있다.

1. 자격 :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 본 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당회원, 안수집사, 시무권사가 포함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3인을 당회에 추천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쳐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청빙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청빙투표 :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 청빙위원회를 재구성한다. 그 밖의 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4. 위임예식: 위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5. 사면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담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 ②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시무(안수)집사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선거방법 :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임직승낙 :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휴직 및 사직 :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에 따른다.
 5.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5년이 경과하면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본 교회 시무(안수)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 남자교인 중 서리집사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선거방법 :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임직승낙 :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의 승낙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휴직 및 사직 : 본 교회 시무집사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5. 무임집사 : 이명 무임집사 중 3년이 경과하면 본 교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
 6. 서리집사 :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시무권사 : 여자 교인 중에서 만45세 이상 된 무흠 서리집사로 5년이 경과하고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명예권사 :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만70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제50조(임직자 교육)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8 장 위원회 및 부속기관

제51조(위원회 목적) ①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②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기관의 지도와 협력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 사역) ①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③ 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주일학교) ① 본 교회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업무는 주일학교 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

② 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각 주일학교의 세부 조직과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4조(찬양대)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찬양대는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한다.

2.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 감독하되 담당위원회가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지원한다.

3.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을 비롯한 임원을 두며,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55조(교구 및 지역과 구역)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지역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합쳐 지역으로 관리하고, 몇 개의 지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한다.
2. 교구 및 지역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
3. 교구에는 교구장과 지역장, 구역장,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5. 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 위원회를 둔다.

제56조(전도회) ① 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 구분은 당회가 정한다.

② 남·녀 전도회별로 연합전도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도회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 9 장 재산 및 재정

제57조(재산의 정의) 교인들의 헌금과 특별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58조(재산의 소유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기중앙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제59조(관리 보존) ①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②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③ 어떤 경우에도 교회 분립과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④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이 없다.

제60조(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 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61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2조(재정운영) ①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재정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보칙) ①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2조(정관 제정 및 개정) 본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한다. 단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의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조(시행세칙 및 규정) ①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당회에서 제정하며 당회의 개회·의결 정족수에 의한다.

단, 위원회 및 부속 기관 등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며 당회의 개회·의결 정족수에 의한다.

②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6조(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 당회 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단, 미조직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장기중앙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2021년 00 월 00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장기중앙교회

공동의회	의 장	김효석 목사	(인)
공동의회	서 기	○○○ ○○	(인)
당 회 원	간서인	○○○ ○○	(인)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장기동 142번지)